

[일련번호 : 79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단가계약 대상을 일반지출 처리 및 용역비용 선지급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지방계약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·용역 및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계약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(단가계약)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·구매·수리·보수·복구·가공·매매·공급·사용·임차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(單價)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제9절 '검사와 대가지급'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계약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는 기성·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.

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. 다만,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,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료(감독일지 등)에 따라 해당 과업이 수행되었음을 검사하고 대가 지급을 하여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과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, 지방계약법에 따른 단가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고 이를 일반지출로 처리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,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비용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단가계약 대상을 일반지출로 부적정 집행 내역

건 명	업체명	착수일자	금액(원)	부적정 내용
공중화장실 내 음성인식 비상벨 점검 ('23.3.~12., 10개월)	주식회사 ○○	2023.3.1.	1,650,000 (2023.6.5. 지출)	- 계약에 의한 지출이 아닌 일반지출 처리 - 사전 계약체결 없이 3~5월 점검비용을 후납 처리 - 기성 혹은 완수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, 물품검사(수)조서를 첨부하여 용역이 미완료된 '23.6.5.에 비용 선지급
○○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임차용역 ('24.7.22.~12.31., 5개월 10일)	(주) ○○○○	2024.7.22.	3,193,540 (2024.7.25. 지출)	- 계약에 의한 지출이 아닌 일반지출 처리 - 기성 혹은 완수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, 물품검사(수)조서를 첨부하여 용역 착수와 동시에 비용 선지급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◆◆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공사·용역 및 물품 구매에 대한 계약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